

제17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11. 1. 21)

조례안 검토 보고서

총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박노해]

【목 차】

1. 거창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
2. 거창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3.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7

<의안번호 제2011 - 3호>

거창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제출일자: 2011. 1. 12.

나. 제출자: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2011. 1. 12.

2. 개정이유

- 거창군 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과 재정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는 “거창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명칭과 목적, 기능 등을 그 통합 취지에 맞도록 정비하고,
- 통합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의 임기, 회의 등 세부 운영에 관한 현행 조례의 전반적인 내용을 일반적인 위원회의 규정 순서 및 체계에 맞게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재정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지방재정

공시심위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는 현행 “거창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명칭을 “거창군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변경함에 따라 조례의 제명과 위원회의 설치 목적, 기능 등을 통합 취지에 맞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정비함(제명, 안 제1조 및 제2조).

- 조례 제명 및 위원회 명칭을 변경함.
 - 「거창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 「거창군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 위원회의 설치목적 및 기능에 자문기능과 심의기능을 명확히 구분 하여 규정함.
 -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재정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의 심의
- 나.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의 사전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각 위원에게 배부하는 시기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안 제6조제3항).
- 3주일 전까지 ⇒ 7일 전까지
- 다. 그 밖에 통합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일반적인 위원회의 규정 순서 및 체계에 맞게 개선 · 보완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33조, 제60조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 제69조, 제70조

나. 예산조치: 2011년 본예산에 반영(1,120천원)

다. 입법예고(2010. 12. 7 ~ 12. 27) 결과: 특기사항 없음

라.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 전부개정 조례안은 거창군 재정계획 수립 자문과 재정운용상황 공시 심의를 위하여 통합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미비점이 많아 일반적인 위원회의 규정 순서 및 체계에 맞게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이 조례는 총 10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목적,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의견청취, 운영세칙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 현행 조례 제명인 「거창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를 지방재정계획과 지방재정공시위원회를 통합한 「거창군 재정 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로 조례제명 및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였음.
- 안 제2조(기능)에서는 현행 조례에서 심의와 자문기능을 심의기 능으로만 규정하고 있는 것을 자문기능과 심의기능을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6조제3항에서는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의 사전 충분한 검 토를 위하여 각 위원에게 배부하는 시기를 현행 3주일 전까지를 7일전까지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음.
- 상기와 같이 이 전부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써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재정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10219호, 2010. 3.31, 타법개정]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계획수립절차 등에 의하여 당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관계 법령에 의한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종합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60조(재정운용상황의 공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2. 발생주의와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
3. 지방채·일시차입금 등 채무의 현재액
4. 채권관리현황
5. 기금운용현황
6.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7.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재정정보

8.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정운용에 관한 중요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운용상황의 공시방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시행 2011. 1. 1] [대통령령 제22532호, 2010.12.20, 일부개정]

제68조(재정운용상황의 공시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운용상황을 공시하는 경우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이하 "공통 공시"라 한다)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이하 "특수 공시"라 한다)로 구분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②공통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1. 법 제60조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의 사항

2. 지방재정분석·진단의 결과

3. 감사원 등 감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 결과

4. 그 밖에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으로서 주민에게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특수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당해 지역을 배포지역으로 하는 일간지 등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⑤그 밖에 공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제69조(재정운용상황의 공시시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는 매년 8월에 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입결손으로 인하여 실행예산을 운용한 경우 또는 다음 연도 수입을 앞당기어 충당·사용한 경우 등 새로운 수요발생시 수시로 재정운용상황을 공시할 수 있다.

제70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0조제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공시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공시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관계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의안번호 제2011 - 4호>

거창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제출일자: 2011. 1. 12.

나. 제출자: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2011. 1. 12.

2. 개정이유

-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제도 개선계획('09.12.17)의 후속조치로써 지방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이수 기회를 부여하고,
-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상당계급별 임용자격 기준과 임용절차 중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을 생략할 수 있는 범위, 시간제근무의 도입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지방공무원법」의 위임근거 및 조례의 내용과 일치 하도록 제명을 변경함.

- 「거창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 「거창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나. 현행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선언적으로만 규정하고 있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상당계급별 임용 자격기준을 별표로 명시함(안 제4조제3항, 별표 신설).

다.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을 생략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함(안 제5조제2항 신설).

-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은 임용예정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하되, 비서관 및 비서를 채용하거나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경우는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라.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이수 기회를 부여함(안 제8조의 2 신설).

- 군수는 지방별정직공무원에게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으며,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에는 보수를 지급하도록 함

마. 지방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 관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임의 규정을 「지방공무원 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 법령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의무규정으로 변경함 (안 제12조의2).

바.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단축하여 근무 하는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의 지정과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에 대한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채용 근거를 마련함 (안 제12조의3 신설).

- 임용권자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업무의 특성 또는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통상적인 근무시간(주 40시간)보다 짧게 근무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하는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조, 제25조의3, 제31조, 제74조, 제76조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3조, 제4조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 제3조
-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제2조, 제3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2009. 5. 19 ~ 6. 09) 결과: 특기사항 없음

라.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표준 안] 개정 [안] 이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2010. 7.)됨에 따라 주요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써

- 지방공무원법의 위임근거 및 조례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제명을 변경하고
- 안 제4조제3항에서는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을 신설하여 구체적으로 별표에 명시하였으며
- 안 제5조제2항을 신설하여 지방별정직 임용시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도록 하고 아울러 공고생략의 근거인 단서조항도 마련하였음.
- 또한, 안 제8조의2항을 신설하여 교육훈련 이수기회를 부여하여 새로운 공직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안 제12조의2에서는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를 성과상여금, 보수, 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강제규정으로 변경하였고
- 안 제12조의3에서는 지방별정직공무원에게 시간제 근무 도입 근거를 마련 하였음.
- 상기와 같이 이 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과 일치시키기 위한 것으로써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 「지방공무원법」

[시행 2010.12. 9] [법률 제10343호, 2010. 6. 8, 일부개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직렬별로 분류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공립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자치경찰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과 그 밖에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기능직공무원: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그 기능별로 분류되는 공무원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별정직공무원: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기준에 따라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계약직공무원: 지방자치단체와의 채용계약에 따라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에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하는 공무원

4. 고용직공무원: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④ 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계약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 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의 규정은 제31조,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6조의3, 제47조부터 제59조까지, 제61조 및 제74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 외에는 이 법과 그 밖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1조 및 제61조는 정무직공무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25조의2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에게만 적용한다.

③ 제57조 및 제58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25조의3(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업무의 특성 또는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신규임용되는 공무원 또는 소속 공무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0.3.22>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전문개정 2008.12.31]

제74조(훈련) ① 모든 공무원과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은 담당 직무와 관련된 학식·기

- 술 및 응용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훈련을 받아야 한다.
-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공무원 훈련에 관한 종합적인 기획·조정 및 감독을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 직위에 있는 공무원은 일상 업무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부하직원을 훈련시킬 책임을 진다.
- ④ 훈련성적은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76조(근무성적의 평정)** ① 임용권자는 정기 또는 수시로 소속 공무원의 근무성적을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평정하여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 평정결과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에 대하여는 상여금을 지급하거나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 ③ 제1항의 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 2008.12.31] [법률 제9300호, 2008.12.31,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법은 교육훈련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지녀야 할 바람직한 공직윤리와 맡은 바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함양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감소속의 공무원(이하 "지방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06.12.20, 2007.1.3, 2007.5.11>

- 제3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책무 등)** ① 삭제 <2007.1.3>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소속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의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1.1.29, 2007.1.3, 2008.2.29>

제4조 (교육훈련의무) ① 모든 지방공무원은 근무능률 및 대민봉사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이 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성실히 이수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지방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훈련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제4조의2 (교육훈련기본계획의 수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지방공무원의 체계적인 능력개발을 위하여 5년 단위의 교육훈련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교육훈련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훈련의 목표

2. 중장기 인력수요 및 소속 지방공무원의 역량 분석

3. 중장기 교육훈련 수요 예측

4. 교육훈련의 실시

5. 교육훈련기관의 개선·발전

6. 교육훈련에 관한 중장기 투자계획

7. 그 밖에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3]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10. 7.15] [대통령령 제22275호, 2010. 7.15, 일부개정]

제2조(근무시간 등) ①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소속 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주 40시간 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④ 「전자정부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15]

제3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15]

□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시행 2010. 3.26] [대통령령 제22091호, 2010. 3.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따라 지방계약직공무원의 채용조건·임용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10.10, 2008.7.23>

제2조(지방계약직공무원의 구분) 지방계약직공무원은 상근하는 전임계약직공무원과 상근하지 아니하는 시간제계약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개정 1998.10.10, 2008.7.23>

제3조(채용자격) ① 전임계약직공무원중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이 아닌 공무원과 시간제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는 자는 별표 1의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8.7.23>

②전임계약직공무원중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는 자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의4제2항에 따른 직무수행요건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8.7.23>

[전문개정 2001.6.30]

□ 지방공무원 임용령

[시행 2010. 6.15] [대통령령 제22203호, 2010. 6.15, 일부개정]

제31조의2(근무성적평정) ①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정기 또는 수시로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승진임용, 특별승급, 성과상여금 지급, 교육훈련,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제7조의2를 준용하여 성과계약에 의한 목표달성을 평가, 부서 운영에 대한 평가나 그 밖에 직무수행과 관련된 평가(이하 "성과계약 등의 평가"라 한다)에 따른다. 다만, 임용권자는 5급 이하 공무원 중 그 소관업무가 성과계약 등의 평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른 평가뿐만 아니라 성과계약 등의 평가를

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성과계약 등의 평가를 할 경우 성과계약체결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은 "지방공무원"으로, "평가자"는 "평정자"로, "소속장관"은 "임용권자"로 본다.

④ 5급 이하 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평정대상기간의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을 구분하여 평가하되,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무수행태도를 평가항목에 추가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평가항목에 따른 평정결과를 고려하여 정하는 평정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점은 직급별로 또는 제32조제8항의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방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통합하여 다음의 분포비율에 맞게 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성적이 "가"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가"로 평가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의 비율을 "양"의 비율에 더한다.

수(64점 이상 70점 이하) 20퍼센트

우(53점 이상 64점 미만) 40퍼센트

양(32점 이상 53점 미만) 30퍼센트

가(32점 미만) 10퍼센트 <개정 2009.9.21>

⑥ 제31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직무에 복귀한 후 2개월 이내에 최초의 정기평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직전의 근무성적평정을 고려하여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정하여야 한다.

⑦ 근무성적평정의 시기,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의안번호 제2011 - 5호>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11. 1. 12.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1. 1. 12.

2. 개정이유

수해복구 공사로 인한 행정구역 경계에 접한 토지 등에 대하여 관할구역을 획정함으로써 주민불편 해소 및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법령 조문 변경 및 용어를 순회함(안 제1조).
 - 지방자치법 제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
 - 제81조의 규정에 따른 ⇒ 제81조에 따른
- 나. 행정구역 경계조정 및 관할구역 정비(71필지 64,098m²)(안 별표 1).
 - 거창읍 서변리 1147-55번지외 60필지 50,357m²를 거창읍 학리로 경계 조정

- 거창읍 서변리 1147-79번지외 6필지 5,327m²를 거창읍 양평리로 경계 조정
- 거창읍 학리 1047-4번지외 1필지 7,879m²를 거창읍 서변리로 경계 조정
- 거창읍 양평리 1239-69번지 535m²를 거창읍 서변리로 경계 조정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4조의2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입법예고(2010. 11. 12 ~ 12. 1) 결과: 특기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황강천 수해복구공사로 인한 행정구역 경계변경으로 2개의 법정리 번지로 나누어져 불편이 많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변경하는 것으로써
- 지방자치법 제4조의2 규정에 의거 행정구역 경계조정 및 관할구역을 정비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법령의 조문을 변경하는 것으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므로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시행 2010.10.16] [법률 제10272호, 2010. 4.15, 타법개정]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이하 "행정면"이라 한다)을 따로 둘 수 있다.

④ 동·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리(이하 "행정동·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⑤ 행정동·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09.4.1]

□ [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 2010.11. 2] [대통령령 제22468호, 2010.11. 2, 일부개정]

제81조(이장의 임명) ① 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읍·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
<개정 2010.11.2>

② 제1항에 따른 이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면장이 임명한다.

③ 읍장·면장이 제2항에 따라 이장을 임명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시장이나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